

부산지방법원 2019. 11. 28 선고 2019가단30575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]

재판경과

부산지방법원 2020. 8. 28 선고 2019나65382 판결

부산지방법원 2019. 11. 28 선고 2019가단305751 판결

전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형주

피 고 1.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인, 담당변호사 이두희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손진섭

2. C

변론 종결 2019. 10. 31

판결 선고 2019. 11. 28

주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[주위적 청구]피고 B은 원고에게 부산광역시 남구 D 임야 1,730㎡(이하 '이 사건 임야'라 한다)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[예비적 청구]원고에게,피고 B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2015.

12. 30. 접수 제1035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피고 C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와 피고 B은 부자지간이고, 피고 C은 원고의 처남이다.

나. 원고는 본인 소유이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C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,피고 C은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2. 1.

11. 접수 제1491호로 2011. 12. 6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.

다. 한편 피고 B은 2015. 12. 30.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 부산등기소 2015. 12. 30. 접수 제103593호로 2015. 12. 1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를 경료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갑 제1, 2, 4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의 소유로 피고 C을 거쳐 아들인 피고 B에게 명의신탁 된 것으로,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 등기는 무효이므로,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, 이 사건 임야가 원래 피고 C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가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 및 갑 제5내지 7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피고 C 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피고 B 또한 원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.

3.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

가. 당사자들의 주장

- 1) 원고는, 피고 B이 명의수탁자인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므로, 원고에게, 피고 B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임야에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, 피고 C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
- 2) 이에 대하여 피고 B은,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바는 없으나 명의신탁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.

나. 판단

- 1) 피고 C이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피고 B이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사실은

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

2) 그러나 을가 제1,5, 7,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, 원고와 피고 B를 비롯한 가족들은 2015년경 피고 C 명의로 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피고 묘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한 사실, 이에 피고 B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취득 세를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경로 이후 발생한 재산세 등을 모두 납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피고 B의 소유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판단된다.

3)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박주영